# 2022년도
# 화장품 사전업무 민원 안내

의료제품안전과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목 차

1. 주요 용어의 정의
2. 화장품법 주요개정사항
3. 화장품 제조·책임판매업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 등록
4. 화장품 제조·책임판매업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 변경등록

청렴韓세상

# 주요 용어의 정의

# 주요 용어의 정의

◇ **화장품이란?[법률 제2조제1호] ※시행규칙 별표 3. 참고**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한다.
다만,「약사법」제2조제4호의 의약품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 **기능성화장품이란?[법률 제2조제2호]**

가.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
나.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다.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
라. 모발의 색상 변화・제거 또는 영양공급에 도움을 주는 제품
마. 피부나 모발의 기능 약화로 인한 건조함, 갈라짐, 빠짐, 각질화 등을
방지하거나 개선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

# 주요 용어의 정의

◇ **사용기한이란?[법률 제2조제5호]**

화장품이 제조된 날부터 적절한 보관 상태에서 제품이 고유의 특성을 간직한 채 소비자가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한

◇ **1차 포장이란?[법률 제2조제6호]**

화장품 제조 시 내용물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 용기

◇ **2차 포장이란?[법률 제2조제7호]**

1차 포장을 수용하는 1개 이상의 포장과 보호재 및 표시의 목적으로 한 포장 (첨부문서 등을 포함한다)

◇ **표시란?[법률 제2조제8호]**

화장품의 용기·포장에 기재하는 문자·숫자·도형 또는 그림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화장품법 등 주요개정사항

# 화장품법 주요개정사항

## ◇ 화장품 업종 분류 개편[제2조 및 제2조의2](2020.04.07. 개정)

1. 화장품제조업

: 화장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조(2차 포장 또는 표시만의 공정은 제외한다)하는 영업

2. 화장품책임판매업

: 취급하는 화장품의 품질 및 안전 등을 관리하면서 이를 유통·판매하거나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알선·수여하는 영업(2019.03.14. 시행)
(※ 소비자들이 제조업체로 오인함에 따라 제조판매업 → 화장품책임판매업 명칭 변경)

3. 맞춤형화장품판매업(2020.03.14. 시행)

: 가.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원료를 추가하여 혼합한 화장품

: 나.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한 화장품

다만, 고형비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의 내용물을 단순 소분한 화장품은 제외한다.

# 화장품법 주요개정사항

## ◇ 맞춤형화장품 관련[법률](2021.08.17. 시행)

**1. [제3조의2제2항]**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맞춤형화장품의 혼합·소분 등 품질·안전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두어야 한다.

**2. [제3조의5]**(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가 될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피성년후견인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의 중독자
4. 이 법 또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5. 제3조의8에 따라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그외 법률 제18448호(2021.08.17. 개정) 참고

# 화장품법 주요개정사항

## ◇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 완화[시행규칙 제8조](2021.05.14. 시행)

1. (종전) "대학등"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이공계(「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이공계) 학과 또는 향장학·화장품과학·한의학·한약학과 등을 전공한 사람

2. (종전) 대학 등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간호학과, 간호과학과, 건강간호학과를 전공하고 화학・생물학・생명과학・유전학・유전공학・향장학・화장품과학・의학・약학 등 관련 과목을 20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2018.12.31. 시행)

3. (신설)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이하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라 한다)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그외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 등) 참고

# 화장품법 주요개정사항

◇ **한시적맞춤형화장품판매업[시행규칙 제8조의2제1항](2021.10.15. 시행)**

…다만,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고한 자(이하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라 한다)가 판매업소로 신고한 소재지 외의 장소에서 1개월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같은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서에 별지 제6호의3서식에 따른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필증 사본과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증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 **맞춤형화장품판매업 겸직[시행규칙 제8조의2제4항](2021.05.14. 시행)**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법 제3조의4제1항에 따른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한 경우에는 해당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판매업소 중 하나의 판매업소에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판매업소에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둔 것으로 본다.

# 화장품법 주요개정사항

### ◇ 책임판매업자의 관리자 겸직 기준 완화(2016.06.30. 시행)

상시근로자수가 10명 이하인 책임판매업을 경영하는 책임판매업자가 책임판매관리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 2차포장 및 표시공정 제조업 등록 제외 및 완화(2016.02.04. 시행)

2차 포장 또는 표시만의 공정은 화장품 제조업 등록 대상에서 제외됨.

기존 등록 업체의 경우 폐업신고를 통해 제조업 제외.

### ◇ 인체, 식품에 직접 적용되는 제품은 식약처로 이관하여 관리(2019.12.31. 시행)

화장비누(사람의 얼굴 등을 깨끗이 할 용도로 제작된 고형(고체상태) 비누), 흑채, 제모왁스의 화장품 전환

※ 화장품 전환 품목: 화장품법 시행규칙(총리령 제1416호, 2018.12.31. 공포) 별표 3 화장품 유형과 사용 시의 주의사항 및 부칙 확인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화장품업 등록

## -화장품 제조업, 책임판매업, 맞춤형화장품판매업

# 화장품 제조업 등록

## ◇ 화장품 제조업 등록 대상(시행령 제2조제1호)

1.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려는 자(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 필수)
2. 제조를 위탁 받아 화장품을 제조하려는 자
3. 화장품의 포장(1차 포장만 해당한다)을 하려는 자

## ◇ 화장품 제조업 등록 신청(시행규칙 제3조제2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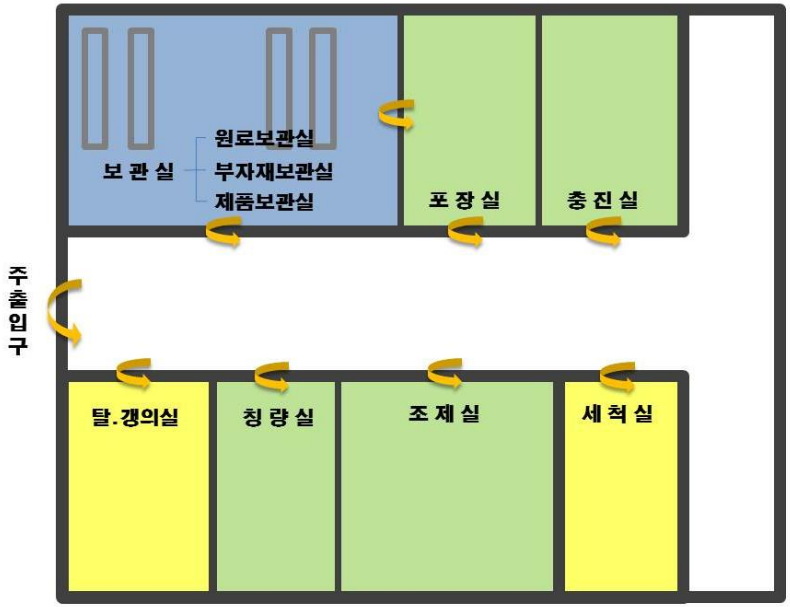
1. 화장품 제조업 등록 신청서(시행규칙 별지제1호서식) ※전자 민원의 경우 신청서 별도 제출 불필요
2. 대표자: 건강진단서

(국가시험면허신청용: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

3. 업체 관련: 사업자등록증, (법인)법인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차)임대차계약서, 평면도, 제조시설 명세서 등
4. 시험시설 명세서: 품질검사 위탁시 품질관리 위수탁계약서 등
5. 시설조사 후 보완

# 화장품 제조업 등록

## ◇ 시설조사




| | |
|---|---|
| 1 | 제조작업을 행하는 작업소에는 쥐. 해충. 먼지 등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을 두고 있는가? |
| 2 | 제조작업을 행하는 작업소에는 작업대가 설치되어 있는가? |
| 3 | 가루가 날리는 작업실은 가루를 제거하는 시설이 되어 있는가? |
| 4 | 원료. 자재 및 제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험실은 있는가? |
| 5 | 원료. 자재 및 제품을 보관하는 보관소는 있는가? |
| 6 | 제조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는 있는가? |
| 7 | 제3자의 시설 및 기구를 이용하고 있을 경우 위. 수탁계약은 체결되어 있는가? |
| 8 | 화장품 외의 물품을 제조하는 경우 제품 상호간의 오염의 우려가 없도록 되어 있는가? 기타 등등 |

#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

## ◇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 대상(시행령 제2조제2호)

1. 직접 제조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려는 자(화장품 제조업 등록 필수)
2. 위탁하여 제조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려는 자
3.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려는 자
4. 수입대행형 거래(전자상거래만 해당)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수여하려는 자(해외구매대행)

## ◇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 신청(시행규칙 제4조제2항)

1.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 신청서(시행규칙 별지제3호서식) ※전자 민원의 경우 신청서 별도 제출 불필요
2.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책임판매관리자 자격서류
3. 업체 관련: 사업자등록증, (법인)법인등기부등본 등
4.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화장품의 품질관리 및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에 적합한 기준에 관한 규정
5. 품질관리 위수탁계약서 등
6. (10인이하기업 & 대표자가 관리자를 겸직하는 경우) 증빙서류

※ '수입대행형 거래' 유형: 1, 3, 6의 서류만 제출

#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

## ◇ 책임판매관리자 자격서류(시행규칙 제8조제1항)

1. 의사 또는 약사: 의사면허증, 약사면허증

2. "대학등"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이공계* 학과 또는 향장학·화장품과학·한의학·한약학과 등 전공자: 졸업증명서

2의2. "대학등"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간호학과, 간호과학과, 건강간호학과를 전공하고
   관련 과목*을 20학점 이상 이수한 자: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3.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화장품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화장품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3의2.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간호학과, 간호과학과, 건강간호학과를 전공하고
   관련 과목*을 20학점 이상 이수한 후
   화장품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경력증명서

#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

## ◇ 책임판매관리자 자격서류(시행규칙 제8조제1항)

3의3.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처장 고시 품목만 해당)
: 증빙자료

3의4. 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화장품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자자격증, 경력증명서

4. 그 밖에 화장품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경력증명서

*이공계: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이공계
*관련 과목: 화학・생물학・생명과학・유전학・유전공학・향장학・화장품과학・의학・약학 등
*화장품 관련 분야: 화학・생물학・화학공학・생물공학・미생물학・생화학・생명과학・생명공학・유전공학・향장학・화장품과학・한의학과・한약학과 등
*화장품 업무: 화장품 제조나 품질관리 업무로 한정됨.

## ◇ 책임판매관리자 직무수행 범위(시행규칙 제8조제2항)

1. 시행규칙 [별표 1]의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품질관리 업무

2. 시행규칙 [별표 2]의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기준에 따른 안전확보 업무

3. 원료 및 자재의 입고(入庫)부터 완제품의 출고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시험・검사 또는 검정에 대하여 제조업자를 관리・감독하는 업무

# 맞춤형화장품판매업 등록

## ◇ 맞춤형화장품판매업 등록 대상(시행령 제2조제3호)

1.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 또는 원료를 혼합한 화장품을 판매하려는 자
2.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한 화장품을 판매하려는 자

※ 단, 고형비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의 내용물을 단순 소분한 화장품은 제외

## ◇ 맞춤형화장품판매업 등록 신청(시행규칙 제8조의2제1항)

1. 맞춤형화장품판매업 등록 신청서(시행규칙 별지제6호의2서식)※전자 민원의 경우 신청서 별도 제출 불필요
2. 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자 자격증 사본, 건강진단서

(국가시험면허신청용: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

3. 업체 관련: 사업자등록증, (법인)법인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차)임대차계약서, 평면도, 시설상세사진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화장품업 변경등록

## -화장품 제조업, 책임판매업, 맞춤형화장품판매업

※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관할식약청 신고

# 화장품 제조업 변경등록

**※ 등록필증 원본 관할청 등기 송부,** 제조업변경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5호)

### ◇ 상호변경

1.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 ◇ 대표자변경

1.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2. 대표자 건강진단서

### ◇ 제조업의구분(유형)변경

1. (제조업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려는 자' 유형을 추가하는 경우) 책임판매업 '직접 제조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영업' 확인

### ◇ 소재지변경

1.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2. 건축물대장, (임차)임대차계약서, 제조시설 명세서, 평면도 등 및 시설조사 보완 등
3. 시험시설 명세서

: 품질검사 위탁시 품질관리 위수탁계약서 등

### ◇ 양도양수(업지위승계)

1. 양수자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2. 사업 양도양수계약서 공증본
3. 화장품 행정제재처분 효과 승계 통지 확인서

# 화장품 책임판매업 변경등록

**※ 등기필증 원본 관할청 등기 송부,** 책임판매업변경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6호)

### ◇ 상호, 대표자, 소재지변경

1.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 ◇ 책임판매업의구분(유형)변경

1. (책임판매업 '직접 제조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영업'을 추가하는 경우) 제조업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려는 자' 유형 확인
2. (수입대행형 거래에서 타 유형 추가의 경우) 관리자자격서류, 품질관리기준매뉴얼,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기준매뉴얼, 품질관리위수탁계약서 등

### ◇ 책임판매관리자변경

1. 책임판매관리자 자격서류
2. (대표자가 관리자를 겸직하는 경우) 10인이하 사업장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 ◇ 양도양수(업지위승계)

1. 양수자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2. 사업 양도양수계약서 공증본
3. 화장품 행정제재처분 효과 승계 통지 확인서

# 맞춤형화장품판매업 변경등록

**※ 등기필증 원본 관할청 등기 송부,** 맞춤형판매업변경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 4)

### ◇ 상호, 대표자변경

1.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 ◇ 관리자변경

1.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자사 자격증
2. 건강진단서

### ◇ 소재지변경

1.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2. 건축물관리대장, 임대차계약서
   평면도, 상세 사진 등

### ◇ 양도양수(업지위승계)

1. 양수자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2. 사업 양도양수계약서 공증본
3. 화장품 행정제재처분 효과 승계 통지 확인서

# 수수료 및 처리기한 안내

| 업종 | 세부사항 | 수수료(원) | | 처리기한 (근무일 기준) |
|---|---|---|---|---|
| | | 전자민원 | 우편(정부수입인지) | |
| 제조업 신규 | - | 27,000 | 30,000 | 15 |
| 책임판매업 신규 | - | 27,000 | 30,000 | 10 |
| 맞춤형 신규 | - | 27,000 | 30,000 | 10 |
| 제조업 변경 | - | 9,000 | 10,000 | 15 |
| 책임판매업 변경 | 기타 변경 | 9,000 | 10,000 | 10 |
| | 책임판매관리자 변경 | 0 | 0 | 7 |
| 맞춤형 변경 | 기타 변경 | 9,000 | 10,000 | 10 |
| |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변경 | 0 | 0 | 7 |
| 재발급 | - | 0 | 0 | 7 |

# 기타 안내

◇ **화장품 폐업, 휴업, 재개(우편 등기 접수)**

1. 화장품 폐업,휴업,재개 신고서 작성(시행규칙 별지 제11호)
2. 등록필증 원본

◇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비종사신고(우편 등기 접수)**

1.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의 업무 비종사신고서 작성
2. 사유서 작성

◇ **화장품 등록필증 원본 재발급(전자민원 또는 우편 등기 접수)**

1. 화장품 재발급 신청서 작성(시행규칙 별지 제18호)
2. (훼손시) 훼손된 등록필증 원본 등기 송부, (분실시) 사유서 작성

◇ **변동사항 미보고 업체: 과태료 부과(50만원)**

화장품법 제2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관련

# 화장품 시험·검사기관

## □ 화장품 시험·검사기관 (17개소)

(2022. 2. 현재)

| 연번 | 지정일 (지정번호) | 기 관 명 | 대표자 | 주 소 | 품목 및 시험·검사 항목 | 유효기간 |
|---|---|---|---|---|---|---|
| 1 | 2003.03.06 (제1호) | 한국식품산업협회부설한국식품과학연구원 | 이효율 | 경기도 의왕시 부곡로 50(포일동)<br>☎ 02) 3470-8200<br>FAX 02) 3471-3492 | 일반화장품(퍼머넌트웨이브용 및 헤어스트레이트너 제품 제외) 및 기능성화장품의 이화학 검사 | 23.7.30. |
| 2 | 2003.06.16 (제2호) | (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권오정 |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br>☎ 02) 2092-3723<br>FAX 02) 2635-6109 | 일반화장품, 기능성화장품, 퍼머넌트웨이브용 및 헤어스트레이트너 제품의 이화학·미생물 검사 | 23.7.30 |
| 3 | 2003.07.18 (제3호) | (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 조영태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로 199<br>☎ 02) 2102-2574<br>FAX 02) 855-1802 | 일반화장품, 기능성화장품, 퍼머넌트웨이브용 및 헤어스트레이트너 제품의 이화학·미생물 검사 | 23.7.30 |
| 4 | 2003.12.30 (제4호) | ㈜한국유로핀즈 분석서비스 | 한재성 | 경기도 군포시 산브루 101번길 13<br>☎ 031) 361-7777<br>FAX 031) 361-7798 | 일반화장품, 기능성화장품, 퍼머넌트웨이브용 및 헤어스트레이트너 제품의 이화학·미생물 검사 | 23.7.30 |
| 5 | 2006.02.14 (제6호) | (재)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 제대식 | 경기도 군포시 엘에스로 115 번길 74<br>☎ 031) 428-3868<br>FAX 031) 455-7365 | 일반화장품(퍼머넌트웨이브용 및 헤어스트레이트너 제품 제외) 및 기능성화장품 제품의 이화학·미생물검사 (탭크의 색연 확인시험 포함) | 23.7.30 |
| 6 | 2007.12.27 (제7호) | (사)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부설한국기능식품연구원 | 권석형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700(삼평동, 코리아바이오파크 B동 지하 1층, 101~102 및 3층)<br>☎ 031) 628-2408<br>FAX 031) 628-0400 | 일일반화장품(퍼머넌트웨이브용 및 헤어스트레이트너 제품 제외) 및 기능성화장품의 이화학·미생물 검사 | 23.7.30 |
| 7 | 2009.12.30 (제8호) |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 | 김동학 |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순천향로 22(지역혁신관)<br>☎ 041) 530-1563<br>FAX 041) 530-3028 | 일반화장품(퍼머넌트웨이브용 및 헤어스트레이트너 제품 제외) 및 기능성화장품의 이화학·미생물 검사 | 23.7.30 |
| 8 | 2010.12.28 (제9호) | 주식회사 오에이티씨 (OATC Inc.) | 방상규 | 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안로 1130, 801~806호, 905~912호, 1010호, 1011호(가산동, 가산디지털엠파이어빌딩)<br>☎ 070) 4044-8830<br>FAX 070) 4032-1902 | 일반화장품, 기능성화장품, 퍼머넌트웨이브용 및 헤어스트레이트너 제품의 이화학·미생물 검사 | 23.7.30 |
| 9 | 2012.12.4 (제11호) | 한국인터텍 테스팅서비스㈜ | 김주용 |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5길 7 (성수동2가 아루디지털타워)<br>☎ 02) 6090-9600<br>FAX 02) 3409-0025 | 일반화장품(퍼머넌트웨이브용 및 헤어스트레이트너 제품 제외) 및 기능성화장품의 이화학·미생물 검사 | 23.7.30 |
| 10 | 2013.1.29 (제12호) | (재)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 서정배 | 경기도 오산시 가장산업서부로 40-44(가장동)<br>☎ 031) 372-1325<br>FAX 031) 372-3846 | 일반화장품(퍼머넌트웨이브용 및 헤어스트레이트너 제품 제외) 및 기능성화장품의 이화학·미생물 검사 | 23.7.30 |
| 11 | 2013.11.8 (제13호) | (사)KOTITI 시험연구원 | 김정슈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111(상대원동)<br>☎ 02) 3451-7000<br>FAX 02) 3451-7179 | 일반화장품(퍼머넌트웨이브용 및 헤어스트레이트너 제품 제외) 및 기능성화장품의 이화학·미생물 검사 | 23.7.30 |
| 12 | 2016.4.20 (제14호) | (재)FITI시험연구원 오창분원 | 김화영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군 오창읍 양청길 21<br>☎ 043) 711-8867<br>FAX 043) 711-8805 | 일반화장품(퍼머넌트웨이브용 및 헤어스트레이트너 제품 제외) 및 기능성화장품의 이화학·미생물 검사 | 22.4.19 |
| 13 | 2017.3.7 (제15호) | 디에이치유(DHU) 바이오융복합시험센터 | 방수진 | 경상북도 경산시 한의대로 1(유곡동) 바이오융복합시험센터 2동 바<br>☎ 053) 819-1495,1497<br>FAX 053) 819-1496 | 일반화장품(퍼머넌트웨이브용 및 헤어스트레이트너 제품 제외) 및 기능성화장품의 이화학·미생물 검사 | 23.3.6 |
| 14 | 2017.12.6 (제16호) | 뷰룸베리타스씨피에스코리아 주식회사 | 김선아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벌말로 126 8층, 901~902호 908~915호 (관양동, 평촌오비즈타워)<br>☎ 031) 688-8000<br>FAX 031) 360-0276 | 일반화장품(퍼머넌트웨이브용 및 헤어스트레이트너 제품 제외) 및 기능성화장품의 이화학·미생물 검사 | 23.12.6 |
| 15 | 2018.7.19 (제18호) | ㈜와이에스환경기술연구원 | 엄요진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5길 42 종로빌딩 10층<br>☎ 02-312-0540<br>FAX 02-312-0560 | 일반화장품(퍼머넌트웨이브용 및 헤어스트레이트너 제품 제외) 및 기능성화장품의 이화학 검사 | 24.7.18 |
| 16 | 2018.12.24. (제19호) | 한국예스지예스(주) 의왕지점 | 이인섭 | 경기도 의왕시 맑은내길 67, 301~304호(오전동)<br>☎ 031-689-8600<br>FAX 031-4332-1659 | 일반화장품(퍼머넌트웨이브용 및 헤어스트레이트너 제품 제외) 및 기능성화장품의 이화학·미생물 검사 | 24.12.23 |
| 17 | 2022.1.28. (제20호) | (재)한국의류시험연구원 | 김성영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전파로 24번길 82<br>☎ 031-538-9443<br>FAX 031-538-9499 | 일반화장품(퍼머넌트웨이브용 및 헤어스트레이트너 제품 제외) 및 기능성화장품의 이화학·미생물 검사 | 25.1.27 |

# 민원 서류 참고 사이트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식약청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정책정보
민원상담
소통알림
지방식약청소개
경인식약청홈페이지-소통알림-공지사항-'화장품' 검색
-화장품제조업및책임판매업(맞춤형)등록안내/휴,폐업신고 게시물 참고
소통알림
소통알림
공지사항
공지사항
화장품제조업및책임판매업(맞춤형)등록안내/휴,폐업신고
기관명 | 경인지방청
등록일 | 2021-03-12
조회수 | 7622
화장품 제조업 및 책임판매업 등록안내자료
DOWN

# 민원신청 방법

http://nedrug.mfds.go.kr 접속 → 전자민원/보고 → 전자민원신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https://nedrug.mfds.go.kr/)(문의: 1544-9563)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청렴한 식약처 국민 안심의 시작"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란?

-공익신고자등(친족 또는 동거인 포함)이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지 않도록 **비밀보장**, **불이익보호조치**, **신변보호조치** 등을 통하여 보호하는 제도

♣보호조치 요구 방법

우편(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공익보호지원과/전화 044-200-7773/팩스 044-200-7949

# - 감사합니다 -